

3. 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사원총회결의무효

㉠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2000. 0. 0.자 사원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인 이사 이○○, 이사 김○○, 이사 김○○, 이사 송○○, 이사 김○○, 이사 노○○을 각 해임하고, 대표자 회장인 이사 권○○, 이사 이○○, 이사 양○○, 이사 김○○, 이사 김○○, 이사 노○○을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합자회사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5820 판결)

㉠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200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회사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임시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 단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광주지법 1997.8.22. 선고 97가합3912 판결)

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2009. 11.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을 대표이사로 이○○을 이사로, 최○○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②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①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④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판결)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09. 10.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겸 대표이사인 박○○, 이사인 박○○, 같은 송○○, 감사인 이○○을 각 해임하고, 한○○, 김○○을 공동대표이사로, 이○○을 이사로, 최○○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해당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소의 이익유무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와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결의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송과는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의 가진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④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법인의 2013. 4. 28.자 임시총회에서 소의 윤○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 그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 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조합이 2008. 12. 8.자 제13차 조합정기총회에서 소외 유○군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되는 주택개발개발조합의 성격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개발조합은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그 감독을 받으며 위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위 조합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으로써 불복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강제가입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공익적 성격상 두게 된 특별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9조가 위 조합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성격을 공법인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90.9.21. 선고 89나48309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회사의 2001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홍○종과 이사 최○도를 각 해임하고, 이○종과 최○명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회사의 2001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홍○종과 이사 최○도를 각 해임하고, 이○종과 최○명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참조판례] ①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경우,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를 당초에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로 그 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한 경우는 제외되고 그 이외의 자가 후임 이사로 선임된 결의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로 그 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 이후 두 차례의 후임 이사 선임결의에 순차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어, 당초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을 이사에서 해임한 당초 주주총회결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된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인 갑 등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정당한 주주도 아닌 자들만이 참석하여 임원 선임의 결의를 한 경우라면, 이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에 을을 이사로 선임한 1차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는 여전히 회사의 현재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 주주인 갑 등으로서는 그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③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되는 경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담보 주식 처분의 효력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3다61338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의 2015. 3. 2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위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39998 판결)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08. 9.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겸 공동대표이사 고○은과 감사 조○판을 각 해임하고, 소의 김○영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소의 이○광을 단독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② 주권발행 전후의 주식양도의 방법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일부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00주 중 6,300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직에서 해임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또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개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8719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의 2009. 12. 20.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정○갑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피고가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정○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가 2009. 1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정○갑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가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위 정○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0952 판결)

[참조판례]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별지 (1)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의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 등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회사의 2014. 4.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박○렬, 손○식을 각 해임하고, 정○문, 이○호, 한○수, 강○근, 김○일, 감사 이○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피고회사의 같은 해 8. 10.자 이사회에서 한○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보통주식 신주 30,000주, 1주금 10,000원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자본금 600,000,000원으로 한 신주발행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②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무효등확인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호 내지 제23호 기재와 같은 각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는 모두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60,000주, 자본의 총액을 130,000,000원으로 하고 보통주식(신주)을 130,000주 발행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520,000주, 자본의 총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보통주식(신주)을 400,000주 발행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3. 이사 김○○를 해임하고 이사로 강○○, 노○○, 노○○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4. 이사 김○○를 해임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5. 이사 최○○을 해임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6. 이사로 최○○, 오○○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7. 이사 노○○, 오○○을 해임하고 이사로 이○○, 박○○, 한○○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8. 대표이사인 이사 오○○, 감사 박○○을 중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9. 이사로 황○○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10. 이사 노○○, 한○○, 황○○를 해임하고 이사로 이○○, 이○○, 오○○을 선임하고, 이사 이○○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11. 이사 최○○를 해임하고 이사로 정○○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12. 이사로 진○○, 오○○, 오○○을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13. 보통주식(신주)을 총수를 200,000주 발행하기로 하고, 자본의 총액을 250,000, 000 원으로하기로 하고, 이사 강○○, 최○○, 이○○, 박○○, 감사 박○○을 해임하고 이사로 홍○○, 박○○, 김○○, 노○○, 강○○, 최○○, 감사로 강○○, 한○○를 각 선임한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14. 이사로 김○○를 선임하기로 하는 20○○. ○. ○.의 주주총회결의
15. 이사로 이○○, 박○○, 신○○을 각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16. 대표이사인 이사 오○○을 해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17. 이사 김○○, 김○○, 김○○, 노○○, 오○○, 오○○, 감사 박○○을 해임하고 이사로 표○○, 이○○을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18. 이사 김○○, 감사 박○○을 해임하고 감사로 이○○을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19. 대표이사인 이사 오○○, 최○○을 해임하고 이사로 이○○, 이○○, 김○○, 정○○, 주○○을 선임하고, 대표이사로 김○○을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20. 이사로 윤○○를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2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00주를 변경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22. 이사 한○○, 최○○, 김○○, 정○○, 주○○을 해임하고 이사로 이○○, 이○○, 김○○, 정○○, 주○○을 선임한 후 보통주식(신주)을 총수를 1,000,000주 발행하고, 자본의 총액을 1,0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23. 이사 박○○, 감사 최○○을 중임하고 이사 장○○을 해임하고, 이사로 이○○, 김○○을 각 선임하기로 한 20○○. ○. ○.의 주주총회결의

[참조판례] ① 퇴임한 이어나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룰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어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갑이 사실상 1인회사의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후 갑이 상법 제389조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다음,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을이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③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09.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이○○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19500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2004.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염○금, 같은 장○석, 감사 신○해를 각 해임하고, 소외 이○영, 같은 이○길, 같은 이○현을 각 이사로, 소외 정○봉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대표이사, 감사, 이사)

1. 피고회사의

- 가)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김○○, 이사 신○○, 정○○, 감사 이○○은 사임하고, 이사에 박○○, 민○○, 전○○, 감사에 우○○, 대표이사에 곽○○을 선임한 결의,
- 나)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곽○○은 대표이사만을, 이사 박○○, 감사 우○○은 사임하고, 이사에 이○○, 이○○, 김○○, 김○○, 심○○, 감사에 양○○, 대표이사에 이○○을 선임한 결의,
- 다)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 이사 이○○, 김○○, 김○○, 심○○은 사임하고, 이사에 김○○, 김○○, 김○○, 진○○, 박○○, 송○○, 이○○을, 감사에 유○○, 대표이사에 김○○을 선임한 결의,
- 라)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곽○○은 대표이사만을, 이사 한○○, 김○○, 진○○, 박○○, 송○○, 감사 유○○은 사임하고, 이사에 이○○, 김○○, 권○○, 대표이사에 이○○을 선임한 결의,
- 마)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은 대표이사만을 사임하고, 대표이사에 곽○○을 선임한 결의,
- 바)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곽○○은 대표이사만을, 이사 김○○, 김○○은 사임하고, 이사에 현○○, 이○○, 대표이사에 이○○을 선임한다는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2013. 11. 1. 임시총회에서 소외 이○성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총회소집통보의 회의목적사항에 포함된 안전에 대하여 총회 개최시 그 안전의 상정 여부를 묻는 안전이 먼저 상정된 경우, 원래의 안전을 상정시키기 위하여는 상정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신입회장을 선출하는 안전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전의 상정에 앞서 과연 그 총회에서 신입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전이 먼저 상정된 경우,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입회장 선출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입회장 선출안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신입회장 선출안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입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

☐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어업면허에 대한 보상금)

1. 피고가 소외 ○○○○개발공사(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할 면허번호 전북 제1111호의 김양식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금 1,362,659,707원을 피고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2013. 10. 3.자 피고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소외공사로부터 위 1.항의 보상금 1,362,659,707원을 수령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각 170,332,463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가 소외공사로부터 수령한 면허번호 전북 제2222호의 새꼬막양식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금 205,478,560원을 피고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2013. 10. 3.자 피고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항의 보상금 중 각 25,684,82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9.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매매계약무효 등

☐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남 ○○군 ○○면 ○○리 산 123-2 임야 822㎡ 중 약 100㎡에 관한 2015. 10. 15. 매매계약 및 위 같은 번지 중 임야 약 100㎡에 관한 2015. 12. 11. 매매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39782 판결)

☐ 매매계약무효확인등 청구(체비지)

1. 별지 목록 토지에 관하여,
 -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위 체비지매각대장상의 피고명의로 된 소유자명의를 말소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명의로의 변경이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체비지매각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명의를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그에 동의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동인의 그 어떤 처분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기속 받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대장에 진실한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소유권의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어 만일 그 권리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동인에 대하여 권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족하고 그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 또는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1986.1.15. 84나3357)

㉠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맺은 매매계약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 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 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 잡은 계약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성립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안위험을 즉시 제거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라. 임금협정무효

㉠ 임금협정무효확인 청구

피고와 원고 전 조합장 임○○ 사이에 2009. 11. 15. 체결된 임금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임금협정무효확인 청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20○○. ○. ○.자 단체임금협정 중 제1조 제1항 “1일 운송수익금은 주유대를 제외하고 1일 00원으로 한다. 주간 00원, 야간 00원으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1992.10.7. 91가합5225)

마. 선거·당선무효 등

☐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10.2.20. 실시한 피고의 위원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 입후보등록무효등 청구

1. 원고가 2008. 9. 1.부터 2012. 8. 31.까지 임기인 한국불교○○종 제50대 중앙종회의원 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종단 재심호계위원회의 2009. 12. 20.자 체탈도첩의 징계결의(초심호계위원회의 2008. 9. 21. 및 2009. 3. 24.자 체탈도첩징계결의에 대한 재심)에 의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50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임기 중 중앙종회회의장예의 출입, 의원선서, 발언, 표결 등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 종회장예의 출입권, 선거권 등이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종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갑이 종회장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징계에 의하여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자신에게 그 임기중 중앙종회장에의 출입권, 의원선서권, 발언권, 표결권, 중앙종회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확인청구는 그러한 것이 모두 중앙종회의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능들이어서 이를 결국 위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아울러 갑이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의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체탈도첩의 징계로 인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의 전제가 되는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② 갑이 종단이나 그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등을 제기한 것이 사욕을 도모하고 종단의 법통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단의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

갑이 소속 종단의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총무원장 등이 총무원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위 총무원장은 계율을 범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위 종단의 승니법에 정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을 침해코자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위 종단을 상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취소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종단에서 종단법규에 의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을 취소시키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사욕을 채우고 종단을 해하기 위하여 위 각 제소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은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14727 판결)

☐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8. 3.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채○○을 조합장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8. 3.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금품제공행위가 개입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선거 및 그에 기한 당선인 결정을 무효라고 한 사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편 당선인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선인 등의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조합장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참조판례] ①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선자 결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일이지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5433 판결)

☐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외 ○○농업협동조합이 2010. 3. 13. 실시한 제10대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위 조합이 아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바. 증서무효

㉠ 공정증서무효확인 청구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5. 7. 작성한 2014년 증서 제352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2015. 2. 6.자 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항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피고가 2014. 4. 30. 원고 반○덕에게 나머지 원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 3,000,000원을 이자의 약정이 없이 변제기는 같은 해 5. 10.로 정하여 대여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제3채무자인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15카기2162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보증으로 같은 법원 2015년 금 제1483호로 공탁한 공탁금 9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위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적부(부적법)

증서진부확인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하게 됨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의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협 또는 불안이 있고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써 그 위협 또는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고 그 외에 별도로 공정증서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에 대한 방식의 위배 또는 채무명의를 형식상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 등 집행문 부여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채무명의로 표시된 조건의 성취여부,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승계의 존부 등에 한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대구고법 1988.5.20. 선고 87나573 판결)

☐ 채무증서무효확인 청구(지급각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0. 10. 2.자 채무지급각서에 의한 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갑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미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다 일시 귀국한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을이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우선 구속을 면하고 출국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 그 각서상의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9. 15. 선고 93가합10549 판결 : 항소)

사. 면직처분·해고무효 등

(1) 면직처분·직위해제·징계·파면 등

☐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교원의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유효)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교감직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31.자 ○○중학교의 교감직위해제처분 및 2009. 10. 20.자 같은 중학교의 교원직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3.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3. 1.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이○○에게 매월 1,133,478원, 원고 마○○에게 매월 1,060,794원, 원고 박○○에게 매월 934,211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5.자 및 2009. 9. 11.자 각 직위해제처분 및 2009. 12. 29.자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 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1993.9.10. 선고 93다10743 판결)

☐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12.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의 가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

☐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1. 12.자 의원면직취소처분과 2009. 12. 31.자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전보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9. 4. 10.자로 한 각 전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9. 4. 12.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원고 김영동에게 월 1,266,000원, 원고 최종영에게 월 1,297,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위 ① 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위 ①항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

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 전직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6. 27.자 전직명령 및 2011. 7. 29.자 징계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제명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14. 4. 25.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헬스클럽 시설주체의 연회비 인상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최고하고 그 회비 미납 및 클럽의 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클럽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회원들을 제명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 직위해제 및 면직무효확인 청구

피고 산하의 ○○대학교 총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9. 1. 4.에 한 각 직위해제 및 2009. 4. 29.에 한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있는 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7. 선고 94다4332 판결)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무효확인 청구

1. 피고가 2010.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1. 1. 15. 원고 김○환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4,422,560원, 원고 박○윤에게 1,245,28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김○환에게 2011.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3,147,75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교수가 임용기간 중에 해임을 당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

②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

③ 위 ① 항의 해임처분이 있는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교수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 직위해제 및 면직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08. 12. 30. 원고 정○○, 손○○, 김○○, 김○○, 문○○, 정○○, 나○○에 대하여 한 2008. 8. 31.자 재임용제외처분, 2009. 1. 4.자 원고 도○기, 오○근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 및 2009. 2. 28.자 도○기, 오○근, 김○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성질과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61789 판결)

☐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교원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처분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직위해제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징계자인 피고가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1428 판결)

㊦ 징계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0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지만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③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룰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3.3.9. 선고 92다29429 판결)

㉠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0. 30.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하고 있고 의원면직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82.4.29. 선고 81나3588 판결)

㉠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09. 8. 3. 원고 채○구, 김○선에 대하여 한 각 면직처분 및 같은 달 5. 원고 최○월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9. 8. 6.부터 원고들을 각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채○구에게 월 1,183,666원, 원고 김○선에게 월 960,444원, 원고 최○월에게 월 942,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13544 판결)

☐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4.자로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2013. 10. 1.자로 한 2012. 4. 1.자 부교수 승진임용에 대한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2013. 10. 1.자로 피고 산하 ○○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음을 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부교수 임용 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여부
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제 규정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 부교수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1689 판결)

(2) 해고무효

☐ 해고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8. 9.자 해고(또는 해고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취업규칙 변경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0.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단체협약상 지점폐쇄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시에는 합의하며, 지점 및 출장소의 신설, 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취지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은 조합과 합의하여 행함이 원칙이나 지점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조합원의 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합원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지점폐쇄 자체에 관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과 미리 합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의 지점폐쇄가 조합 또는 조합원들과의 사전협의 또는 협의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지점폐쇄 조치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점거 농성은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49,058원 및 2016. 2.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523,2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성격,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기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6.10.2. 선고 95가합17284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17.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0.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 있어서 배차 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4.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35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경영진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유인물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②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피징계자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상사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이들 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및 경영진의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 29.자 해고(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2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7일에 753,425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단체협약 등의 효력(유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근로자의 퇴직이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조합원이거나, 또는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 근로자가 퇴직 당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와 만일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퇴직 당시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8. 28에 한 해고(면직처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박○○에게 2010. 8. 28.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25.에 667,980원씩을, 원고 정○○에게 2010. 8. 28.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25.에 723,48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원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치유되는지 여부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는 매월 981,950원, 그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117,510원씩의 돈 및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근로자가 상사동료의 폭행·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그 휴직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결근이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 53096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56,3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일에 771,171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협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없다고 한 사례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17.자 승무정지 및 같은 해 8. 3.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입사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②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소송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을 부정한 사례

회사가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제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계속중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그 소송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 제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별도의 해고사유인 학력 등의 기망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장차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자가 불법파업을 개시한 이후이어서 그 후에는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 및 그 해고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뿐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근로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기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2차 해고가 신의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을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11.에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967,78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6. 30.자 강직 및 같은 해 7. 12.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853,808원의,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월 895,058원의, 그다음 날부터 2011. 3. 31.까지는 월 1,016,471원의, 그다음 날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1,152,689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

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2011. 10. 30.자, 원고 한○○, 정○○에 대한 2011. 11. 25.자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에게 23,032,986원 및 2014.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979,5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한○○에게 25,198,026원 및 2014.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976,0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에게 20,292,114원 및 2013. 1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972,5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 잡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 1. 25.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선정자 김○안, 이○희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김○진, 김○실, 김○은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원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선원을 해고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무효였던 해고가 위 기간의 경과로써 유효로 되는지 여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 정○영에 대하여 한 2011. 7. 20.자 해고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해 8. 28.자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정○영에 대하여는 2011. 7. 21.부터, 원고 이○자, 김○련, 박○렬, 이○남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9.부터 각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원고 이○자에게는 519,500원, 원고 김○련에게는 557,000원, 원고 박○렬에게는 533,000원, 원고 이○남에게는 532,773원, 원고 정○영에게는 1,022,463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2. 3.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2. 3. 1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원고 백○선에게 월 1,3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 박○규에게 월 1,0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 문○기에게 월 1,2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 임○승에게 월 7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무효)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20○○. ○.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0일에 매월 금 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권고사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원고의 처,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가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 〇. 〇.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20〇〇. 〇. 〇.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00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 〇. 〇.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20〇〇. 〇. 〇.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00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부터 2009. 10. 22.까지는 매월 439,745원의,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매월 513,342원의, 그다음 날부터 2011. 6. 30.까지는 매월 540,952원의, 그다음 날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609,78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정리해고의 의의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9.부터 2012. 2. 29.까지는 매월 876,000원, 그다음 날부터 2012. 7. 31.까지는 매월 906,000원, 그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91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성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 25.자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1,285,685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시위 등으로 흥분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단식, 철야 농성을 하며 분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교수를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② 징계파면 사유에 재임명 이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계의 부당성 여부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조교수로 재임명된 후의 사유들까지 보태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면, 징계 사유중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9689 판결)

☐ 해임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5.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1. 9. 3.자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3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정규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상시 근무하게 한 경우, 그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교원 자격을 갖춘 자를 임시교사로 채용하여 교원직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이들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9.5. 선고 97다20342 판결)

[참조판례]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을 당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되는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6448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가 20〇〇. 〇. 〇.자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〇〇. 〇. 〇.부터 본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금 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조항을 둔 취지 및 이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무효)

일반적으로 인사처분에는 인사이동, 상벌, 해고 등 근로관계의 변동, 소멸을 가져오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3) 교원임용

☐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 청구(교수)

피고가 20〇〇. 〇. 〇. 원고에 대하여 한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청구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 재임용을 위한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 제외 및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부터 원고의 재임용시까지 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무효확인 소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의 재임용제외처분이자의적이라고 다투면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근거로 이를 배척한 사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내규상의 심사평정 결과가 재임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이 재임용 대상자를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학교 법인이 나머지 재임용 대상자 전부를 재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총장의 자의적인 심사평정결과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6.10. 선고 97다3132 판결)

아. 기타 무효확인

㊦ 신원보증계약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 20〇〇. 〇. 〇.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소외 박〇〇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20〇〇. 〇. 〇.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 청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외 망 김〇우가 2006. 12. 31 법무법인 〇〇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 1453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과 일본국에 있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 및 채권전부를 유언자의 자, 원심 공동 피고 김〇무(일본명 〇〇〇)에게 유증한다.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로 피고 김〇구를 지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반혼수상태에 있던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그의 아들이 손에 필기구를 쥐어준 다음 그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의식상태에서 큰 소리로 부르거나 고통을 가하면 겨우 반응하는 등의 반혼수상태에 있던 유언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면전에서 일정한 내용에 따른 위 변호사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증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어 그의 아들이 손에 필기구를 쥐어준 다음 그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하였다면 이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1990.5.25. 89가합21833)

[참조판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6.8. 선고 92다8750 판결)

☐ 유언무효확인 청구

○지방법원 2015ㄴ6 유언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5. 3. 3. 검인한 유언자 망조○○의 대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임명무효확인 청구(대학교 총장)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장이 20○○. ○. ○.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총장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에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학교총장이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대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이나 교수 및 총장자격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학교총장이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에 어떤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라는 점만으로 대학교총장이 적법하게 임명되었는지 또는 현재 적법하게 교수 및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실

상의 간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총장임명의 무효확인이나 교수 및 총장자격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법상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서부 1993.2.16. 선고 92가합49039 판결)

[참조판례]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4. 선고 92마916 판결)

☐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

한국불교○○종이 피고를 경북 ○○군 ○○면 ○○리 산 9 소재 ○○사의 주지로 임명한 2002. 10. 25. 자 및 2004. 12. 7. 자 각 주지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국사의 한국불교○○종에의 사원등록이 2002. 5. 28. 자로 말소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어느 사찰의 종단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③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임명무효확인 소의 적부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3872 판결)

☐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청구

1. 피고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 2002. 6. 29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법인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재단법인 설립의 수임자가 설립과정에서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3.4.13. 선고 91다29064 판결)

☐ 제재처분무효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입찰참가자격제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〇〇. 〇. 〇.자 원고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부터 20〇〇. 〇. 〇.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〇〇. 〇. 〇.자 원고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부터 20〇〇. 〇. 〇.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제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의 지위는 그 제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이 아닌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의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1991.6.11. 90가합 68579)

☐ 정관무효확인 청구

2012. 4. 29. 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100차 총회에서 결의한 피고의 정관개정결의와 위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정관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② 지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

대하여 지회의 회원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협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 61567 판결)

☐ 주식인수무효확인 청구

1. 피고가 1979. 10. 25.자로 발행한 균등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의 신주 중 1,582주에 대한 피고 이○덕의 신주인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1,582주 중 원고 박○일에게 987주, 원고 정○홍, 백○봉, 황○자, 이○민에게 각 130주, 원고 정○석에게 49주에 대한 각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상법상 신주인수무효의 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법상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주주 또는 이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일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신주발행절차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특정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서 신주인수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불법하게 침해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불법하게 배정한 신주에 관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1987.4.2. 선고 86나3345 판결)

☐ 주식양도무효확인 청구

1. 계약무효확인 청구부분

가) 원고 안재현과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사(2014. 1. 4. 미래상사주식회사에서 위 상호로 변경됨, 이하 피고 미래상사라 한다) 사이에 2007. 2. 26. 체결된,

- (1) 위 원고 소유의 대한공업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1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 (2) 위 원고 소유의 동화통운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2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 (3) 위 원고 소유의 종로물산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3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4) 위 원고 소유의 을지토건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4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나) 원고 정태영과 피고 미래상사 사이에 2007. 2. 26. 체결된 위 원고 소유의 동화통운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5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다) 원고 안재철과 피고 미래상사 사이에 2007. 2. 26. 체결된 위 원고 소유의 종로물산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8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라) 원고 정태영과 피고 청계방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계방직이라 한다) 사이에 2007. 2. 26. 체결된,

(1) 위 원고 소유의 종로물산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6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2) 위 원고 소유의 을지토건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제1목록의 7 기재 각 주식과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각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주식인도 청구부분

가) 피고 미래상사는 동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내지 8 기재의 각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1) 원고 안재현에게 별지 제1목록 1 내지 4 기재 각 주식 중,

(2) 원고 정태영에게 별지 제1목록의 5 기재 각 주식 중,

(3) 원고 안재철에게 별지 제1목록의 8 기재 각 주식 중,

각 그 목록 끝에 기재한 일부 주식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청계방직은 동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6, 7 기재 각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 정태영에게 위 각 주식 중 각 그 목록 끝에 기재한 일부주식을 인도하라.

3. 대상 청구부분

가) 피고 미래상사는 원고 안재현에게 82,735,000원, 원고 정태영에게 1,175,000원, 원고 안재철에게 9,5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청계방직은 원고 정태영에게 6,63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㉔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소외 망 박○○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행된 20○○. ○. ○.자 명의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㉕ 채권양도무효확인 청구(조정사채, 양수양도계약)

1. 피고 ○○전기주식회사는 원고가 동 피고회사에 대하여 20,450,460원(월리 1푼 3리 5모)의 조정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남○○은 원고와의 사이의 20○○. ○. ○.자 위 조정사채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

X(원고)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권자로서 Y(피고 ○○ 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20,450,460원의 조정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 Z(피고 남○○)에게 위 조정사채권을 12,679,257원(위 채권액의 6할 상당)에 양도하고, 같은 날 Y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X는 위 조정사채권 양도는 X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Y에게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Z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무효확인을 구한다.

㉖ 통합대회 및 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04. 2. 28. 15:00 피고조합 사내식당에서 한 피고조합과 원고조합을 통합하는 결의 및 원고조합의 명칭을 ○○통신노동조합 ○○지부로 변경하고 지부장에 소외 김○윤, 부지부장에 소외 임○한을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②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당해행정관청이 그 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동 취소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위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은 그와 같은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1984.7.27. 84가합254)

☐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권고퇴학처분 및 같은 달 10.자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북부지원 1993.2.3. 선고 92가합 9078 판결)

☐ 호봉승급정지처분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09. 1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승급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승급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근로자에 대한 승급정지처분은 그 성질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 처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기간 중 행해진 승급누락으로 인하여 그만큼 근로자에게 호봉 및 임금상의 불이익과 함께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궁극적 해결수단으로서 적절하고, 이와 같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의해 근로자의 현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을 포괄적으로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을 긍정함이 옳다.(1991.1.24. 90가합44764)

☐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 ○○정씨 대총회(이하 피고 중중이라 한다)의 2007. 5. 19.자 소외 정○규를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기 만료된 중중의 대표자가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그 임기만료 이후로도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회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